

의안번호	2201432
의 퇴 인	박주민의원
회 답 일	2024.9.13.
추 계 번호	24D166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¹⁾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온라인 플랫폼²⁾ 서비스에 관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온라인 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400만원, 2030년 8,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억 5,000만원(연평균 7,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안 제26조)	40	40	40	40	40	200	40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안 제27조)	35		35		35	105	21
자문위원회 (안 제40조)	9	9	9	9	9	45	9
합 계	84	49	84	49	84	350	70

1) 안 제6조(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이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관문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일 것
3.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아니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인정되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지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것

2) 안 제2조(정의)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 (이용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26조(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27조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29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40조 (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부문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4조 (이용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	미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체결 시 그 이행을 독려 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이에 따 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그러나 현재 협약제도 시행 중인 타법의 사례를 살펴보았 을 때, 직권조사 면제 등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지원시책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유통분야)」 제14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 공기준)에 따르면, 협약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 평가 시 직 권조사 2년 면제,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이상 표창 수여 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2	안 제26조(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	
3	안 제27조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	
4	안 제29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	미대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 거래위원회 내부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하도록 할 예 정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됨
5	안 제40조 (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안 제26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안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1년마다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을 1년마다 수행하는 경우 연간 4,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사업의 내역사업인 ‘ICT³⁾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에서 지원되고 있는 ‘ICT분야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의 소요예산이 4,000만원임(2024년)을 고려할 때, 이와 동일하게 추정함

[표 2]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시장조사	40	40	40	40	40	200

3) ICT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약자로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의미

나.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안 제27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안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2년마다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시장조사에 따른 소요비용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2년마다 3,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사업의 내역사업인 ‘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에서 지원되고 있는 ‘플랫폼 분야 등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의 소요예산이 3,500만원(2024년)임을 고려할 때, 이와 동일하게 추정함

[표 3]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자문위원회	35		35		35	105

다.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안 제40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부문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연간 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추계 방법은 위원수에 회의수당 및 연간 회의 개최횟수를 곱하여 추정함
 - (위원 수) 제정안에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 (회의수당) 회의수당은 20만원⁴⁾으로 가정함

4)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 (연간 회의 개최횟수) 연간 회의 개최횟수는 유사 위원회의 연간 개최회의 수 3회를 준용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자문위원회인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연간 개최회의수 3회(2021.7~ 2022.6), 2회(2022.7~2023.6) 등을 준용
- (소요비용) 자문위원회 설치 시 소요비용은 연간 900만원(15명×20만원×3회)으로 추정됨

[표 4] 자문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자문위원회	9	9	9	9	9	45

라. 추계결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장조사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실시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3억 5,000만원(연평균 7,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안 제26조)	40	40	40	40	40	200	40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안 제27조)	35		35		35	105	21
자문위원회 (안 제40조)	9	9	9	9	9	45	9
합 계	84	49	84	49	84	350	70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50쪽)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